



**ISLAND OF GUAM**  
**OFFICE OF THE GOVERNOR**  
HAGÁTÑA, GUAM 96932  
U.S.A.

**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대응을 위한 행정지시: No.2020-07**

**압류 및 퇴거명령 유예, 가격 상한제 구체화 & 화상 공청회 참가 제안**

- 2020년 3월 14일,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부터 자국민과 여행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괌에 공중 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함.
- 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, 코로나 19 공동 대응 노력 (COVID-19 Unified Response Effort: “CURE”) 대응팀 구성, 공적, 사적, 상업적 활동을 제한하는 3가지의 행정지시를 추가적으로 선포함.
- 괌 지역사회는 각종 시설 및 기관들의 휴업 및 휴관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음.
- 2020년 3월 18일 미 주택도시 개발부(HUD)에서는 임대인,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지원 차원으로 모든 압류 및 퇴거명령을 금지할 것을 발표함.
- 괌 대법원의 행정지시 No. ADM20-210에 의거하여 괌 대법원 및 상급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됨.
- 이에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하기의 사항을 지시함.

**1. 시설 및 자재에 관한 비상조치 연장**

공공 및 사업시설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지시 No. 2020-05의 2항목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유효함.

**2. 압류 및 퇴거명령 유예**

괌 대법원의 행정지시 No. ADM20-210에 의거하여 본 행정지시 공포일부터 비상사태가 처음 선언된 행정지시 No. 2020-03 공포일까지 건물(임대포함), 토지 관련 압류 및 퇴거명령이 금지됨. 현재 진행중인 압류 및 퇴거명령은 본 비상사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중단됨.

- a. 본 행정지시는 임대, 담보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의 지불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님.
- b. 괌 주택 도시 재개발국 (The Guam Housing and Urban Renewal Authority), 괌 주택 공사 (Guam Housing Corporation), 차모로 토지 신탁 관리 위원회(CHamorru Land Trust Commission)와 같은 주택공사들은 본 비상사태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 주택 보조금 수혜자 및 지원자들이 해당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것임.
- c. 괌 국세청(DRT)은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재택 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낼 것임.

**3. 가격 상한제: 가격 부풀리기 금지**

공중 보건 비상상태 기간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상한제를 실행되며, 이는 일부 항목에 가격 부풀리기를 금지하기 위함 임. 본 행정지시 및 행정지시 No. 2020-03는 시장 변화에 따른 가격조정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. 단, 가격조정이 물건 및 주거임대료, 특히



**ISLAND OF GUAM**  
**OFFICE OF THE GOVERNOR**  
HAGĀTÑA, GUAM 96932  
U.S.A.

본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보호용품의 가격인상을 포함하지 않음. 공공법 35-74 및 행정지시 No. 2020-03에 공표된 체온계, 물티슈, 종이 타월, 알로에, 라텍스, 장갑, 해열제, 기침약, 아연 보충제, 마스크, 소독용 알코올, 휴지, 티슈 등이 해당됨. 해당 품목은 추가되거나 정정될 수 있음.

#### 4. 화상 공청회를 통한 정부 개방

광 의회, 정부관계기관,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일반 시민들이 공청 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음. 이러한 사항은 본 행정지시 공표일로부터 행정지시 No. 2020-03을 통해 발표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끝나거나 연장된 기간 동안 유지됨. 공청회에 실질적인 참석을 요구하는 모든 지방법은 유보됨.

이 외에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.

- 공청회 참석자 및 장소를 공지해야 함.
- 각 화상 공청회 장소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.
- 일반 시민들은 모든 화상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있음.
- 모든 화상공청회에서는 안건이 제시되어야 함.
- 최소한 한 명의 의원은 제시된 화상 공청회 장소에 실질적으로 참석해야 함.

화상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르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음.

- 행정지시 No. 2020-06, 5항목에 의거하여 공공사업 관련 회의를 열고자 하는 정부기관 및 정부관계기관은 광 법무장관실 웹사이트에서 회의 내용을 먼저 제출해야 함. 이는 웹사이트에 공지하기 위함이며, 제 시간에 공지를 게시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 날짜 전에 제출되어야 함.
- 위와 같은 공지 조건과 같이, 각 단체는 전화상 또는 전자상으로 공청회 참석 권한 및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이 공청 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최소 한 곳 이상의 장소를 공지해야 함.

#### 5. 인력축소 및 근로 시간 단축 필수 신고

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타격을 받은 고용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(이하 DOL)는 고용주들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인력 축소를 위해 행한 해고, 일시해고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. 신고서는 최소 해당 인력 축소에 영향을 받은 직원의 수, 이름, 그리고 인력축소 및 근로 시간 단축 전 월/연봉을 명시해야 함.

#### 6. 집행

본 행정지시 No. 2020-03, 2020-04, 2020-05 또는 2020-06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벌금 또는 사업허가 해지를 받을 수 있음. DPHSS, DOL, DRT는 본 행정지시와 관련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광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.

#### 7. 분리 가능성



**ISLAND OF GUAM**  
**OFFICE OF THE GOVERNOR**  
HAGÁTÑA, GUAM 96932  
U.S.A.

본 행정지시나 상기의 조항이 개인에게 유지되는 경우, 무효는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지시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, 이 목적을 위해 이 지시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음.

2020년 3월 28일 광 하갓냐에서 공표

루 레온 게레로  
광 주지사